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22 선고 2022가단520478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6.

판 결 선 고 2023. 2. 22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63,346,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3.부터 2022. 10. 12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1. 10. 8. 체결된 매매계약을 66,365,86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66,365,8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4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1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3. 피고 2에 대한
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[주문 기재 66,365,866원의 근거: 63,346,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3.부터 2022. 10.

12.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2. 11. 16.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
지연손해금의 합계액 66,365,866원(= 원금 63,346,080원 + 지연손해금 3,019,786원)]

판사 이백규

별지